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2020년에 통과된 소위 데이터 3법에 대해 시민사회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부르며 반대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요지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적 연구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미신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도 있습니까? 이렇게 과학적 연구를 동어반복적으로 정의한 것은 기업들의 상업적 연구를 포함해서 연구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수집 목적 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집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더 큰 공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사회적 가치가 큰 공익적 연구를 위해서 제공될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렇게 개정되었다고 개인의료정보의 목적 외 제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동의없이 의료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가명처리된 개인의료정보는 의료정보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아는지 지난 21대 국회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환자 동의없는 개인의료정보의 제공은 불법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제공할지 여부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방대하고 민감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 보험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한 연구에 국민의 개인의료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